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,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2호 중 “참석할”을 “참석하거나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”로 한다.

제20조제1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

제20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: 3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9조(공가) 행정기관의 장은 소	속 공무원(제12호의 경우 「공	제19조(공가)	-----	
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	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	-----	-----	
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	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	-----	-----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	-----	-----	
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.		-----	-----	
1. ~ 11. (생 략)	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
12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	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9	12. -----	-----	
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	(選任)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	-----	-----	
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	법 제17조 및 「노동조합 및	-----	-----	
노동관계조정법」 제17조에	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	-----	-----	
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	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	-----	-----	
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	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	-----	-----	
참석할 때		참석하거나 「노동조합 및 노	-----	
		동관계조정법」 제25조에 따	-----	

13. · 14. (생략)
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⑬ (생략)

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3. · 4. (생략)

⑮ ~ ⑰ (생략)

⑱ 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

은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---

13. · 14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

⑭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
우

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⑮ ~ ⑰ (현행과 같음)

⑱ ----- 5년 -----

-----.

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 <u>1. · 2.</u> (생 략) ①9 · ②0 (생 략)	-----. <u>1.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: 3일</u> <u>2. · 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①9 · ②0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복무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44